입안계획서

1. 제명

○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·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 제 2020-13호, '20.4.1.)

2. 개정사유

○ 관세법 등 위반 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규정에 법 개정사항* 반영 및 누락된 위반 법조** 추가

* 관세법 제275조의4(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) 신설('21.1.1.)

**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○ AEO 업체에 대한 감경기준(공인등급) 적용 시점 명확화

* 위반행위시와 통고처분시의 공인등급이 다른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감경 비율 상이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재범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*에 따른 사항 및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위반행위 추가

*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신설(관세법 제275조의4)

□ AEO 업체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행위시의 공인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

4. 제정·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(고시만 해당)

조문번호	법령위임근거 조항
○ 관세법 제311조제4항	○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통고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
○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 제1항～제4항	○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거나 줄일 수 있음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"붙임"

6. 시행 일자 : 2023. 0. 00. (공포즉시 시행)

7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 출 처 : 관세청 조사총괄과

○ 담 당 자 : 관세행정관 노진상(042-481-7952)

○ 제출기한 : 2023. 6. 15.

○ 제출방법 : 메모보고, 전자문서